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제 2 장 성능인증

이 세칙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운영방법, 성능인증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기준의 운영방법

기준의 운영방법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다.

1. 소화시험<신설 2016.2.19.>

1.1 소화시험에 의해 정해진 소화농도에 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안전율(A(C)급 : 1.2, B급 : 1.3)을 곱한 값을 최소설계농도로 정한다. 다만, 방출면적확인시험에서 2.1의 경우와 같이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는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를 A급 최소설계농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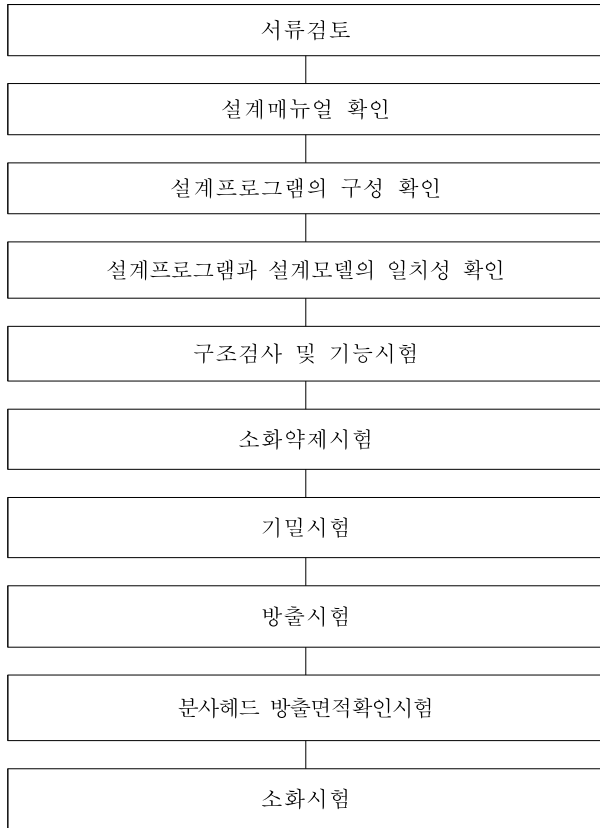
2.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신설 2016.2.19.>

2.1 기준 별표 3의 라목 단서 조항에 따라 시험농도 적용 시 A급 소화농도의 120%를 적용한 농도가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에 미달하는 경우는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1.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항목		비 고	
1. 서류 검토		설계도서, 명세서 등의 서류 검토	
2. 설계매뉴얼 확인		설계매뉴얼 구성 확인	
3. 설계프로그램의 구성 확인		설계프로그램 구성 확인	
4. 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 확인		설계모델 50개에 대한 확인	
5.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	1) 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 시험설비의 구조 및 부품설치상태 확인 ○ 시험실의 기밀시험 및 누설량 측정	
	2) 소화약제시험	소화약제의 제품검사유무 확인	
	3) 기밀시험	설치된 부품 및 배관설비 등에 대한 누수여부	
	4) 방출시험	가. 방출시간측정	○ 시험모델 20개 이상 검토 후 5개 이상 선정 * 선정된 시험모델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설계프로그램의 해당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출시험(시험모델별 각각 2회 이상)
		나. 방출압력측정	
		다. 방출량 측정	
라. 분사헤드별 소화약제 도달시간 및 방출종료 시간 최대편차			
5)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최소 및 최대높이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 시험(시험모델별 각각 2회 이상)		
6) 소화시험	○ A급 소화시험 및 B급 소화시험은 시험유형별 각각 2회 실시 ○ 소화시험은 A급 및 B급 모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급 또는 B급 중 하나의 시험만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시험을 적용하며 이 내용 등을 승인서 등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2. 시험순서



3. 처리기간

구분	성능인증	변경인증
처리기간	150일	140일

제 3 장 제품검사방법

1. 제품검사를 신청한 소화설비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설계도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매뉴얼상의 기술적 권장사항 및 제한사항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 (2) 설계도서에 기록된 내용 등을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심사하는 경우 적합할 것

2.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의 판정

- (1) 검사방법은 기준 및 제1장에 따라서 시행한다.
- (2) 설계도서가 제1호의 각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남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2012. 2. 9)

이 세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9)

이 세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